



제417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하한액 명시 〉

■ 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059호)

2024. 8.

정 무 위 원 회
전 문 위 원 최 기 도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하한액 명시	2
※ 참고자료	7

I. 제안경위

1. 제안자 : 김승수의원 등 11인
2. 제안일 : 2024. 5. 31.
3. 회부일 : 2024. 6. 27.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65세 이상인 참전유공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할 뿐 아니라,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도록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충실히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Ⅲ. 검토의견: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 및 하한액 명시

-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1호¹⁾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7항 및 제8항).²⁾

현행	개정안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생략) ⑦ 참전명예수당은 월액(月額)으로 지급하며, 그 지급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지급액은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참전명예수당 지급 결정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과 참전명예수당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정하여야 한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정의) 1. ~ 10. (생략)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2) 참전명예수당은 월 39만원(2023년)에서 월 42만원(2024년)으로 인상됨.

<신 설>	⑧ 참전명예수당의 구체적인 지급액, 지급방법,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 현행법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은 그 지급액을 월 42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음.³⁾

○ 그러나 참전명예수당이 월 42만원에 불과하고, 대부분의 참전유공자들이 고령으로 정기적인 병원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바, 지원 수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과 참전명예수당액을 합산한 금액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상이 되도록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과 지급 하한액을 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참전명예수당)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는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수당지급 대상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이 참전명예수당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급여금 또는 수당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여 지급한다.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제6호·제7호 또는 제9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보훈급여금을 지급받는 경우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3에 따른 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참전명예수당의 지급금액은 월 42만원으로 한다.

○ 2024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368만원으로, 이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은 221만원임.

□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의 지급 기준을 정하고 하한액을 규정하는 경우, 본인과 그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에 따라서는 참전명예수당이 현재보다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는 참전유공자들에 대한 예우 수준을 보다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겠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첫째, 2023년 기준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는 참전유공자는 132,479명으로 연간 6,213억 700만원이 지급되고 있음. 개정안에 따를 경우 참전유공자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이 정해지게 되므로 정확한 재정 소요를 예측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으나,⁴⁾ 재정 부담 증가는 불가피하다고 보이므로 이를 위하여 필요한 예산과 재원조달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 둘째,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한 금액을 지급하고 있는데, 개정안과 같이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을 고려할 경우 참전유공자별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거나 수당이 다르게 지급될 수 있음.⁵⁾

- 동 조항은 기존에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지급되던 생계보조비⁶⁾를,

4)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현재 참전명예수당은 소득수준이나 가구원의 수와 무관히 지급되고 있어, 참전유공자 가구원의 소득·재산 등을 파악할 수 없음.

5) 참전명예수당은 기존 생활 수준에 따라 지급하는 생계보조비를 참전명예수당으로 변경한 것임.

6) 2001년 당시 생계보조비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당시 참전군인)로서 가구원의 1인당 월평균 소득액과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 예우를 지향한다는 취지에서 소득 수준 등에 대한 고려없이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2002년 1월 26일)한 것임. 따라서 개정안에 따라 일부 참전유공자에 대해서만 명예수당을 지급하게 된다면 동 제도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음.

- 또한, 기준 중위소득의 60%와 소득인정액의 차이가 42만원 보다 적은 경우⁷⁾에는 오히려 참전명예수당이 줄어들게 되므로 이에 대한 반발이 야기될 수 있음.

○ 셋째, 개정안에 따른 경우 신체적 희생을 입은 상이군경 또는 공헌의 정도를 인정받아 훈장을 받은 사람보다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이 많아질 수 있어,⁸⁾ 희생과 공헌의 정도를 고려하여 지급하는 보훈보상의 원칙이 훼손될 우려가 있음.

<개정안에 따른 참전유공자 수당과 상이유공자 등 보상금 비교>

(단위: 천원)

참전명예수당		상이7급 보상금		무공영예수당
현행	개정안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420	최소 0 ~ 최대 2,210*	608	426	480~500

* 2024년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 2,210천원 적용

자료: 국가보훈부

소유재산이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월 65,000원을 지급하였음.

7)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1.2%, 2인 가구의 경우 48.6%, 3인 가구의 경우 51.1% 보다 크다면 오히려 개정안에 따라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이 감소하게 됨.

8) 본인 및 동거가족의 소득인정액 고려하여 최대 2,210천원까지 지급 받을 수 있음

□ 국가보훈부는 개정안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경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모든 보훈대상자의 보상수준 상향 요구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이는 보훈급여금 전반에 걸친 인상 요구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국가재정 부담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임.

문 의 처
02)6788-5112

참고**제21대국회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개정안**

□ 제21대 국회에서 참전명예수당 인상과 관련한 유사 법률안 11건 발의되었으나 정무위 상정 후 임기만료로 폐기됨

구분	대표발의자	개정안	
		인상내용	금액(천원)
1	김예지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60 이상	1,055
2	권명호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879
3	정희용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1,758
4	권철승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1,231
5	정진석의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528
6	이채익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이상	1,758
7	장제원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879
8	이헌승의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5 이상	615
9	구자근의원	1인 가구 최저생계비 100분의 70 이상	1,279
10	유기홍의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	583
11	김승수의원	1인 가구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778